

붙임1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 협 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7. 7

현대도시개발(주)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변경의 배경

가. 국제 관광환경의 급변과 유사경쟁 심화

- 시대변화와 더불어 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관광관련 산업종사자 또한 세계 관광시장속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중·일·러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블록의 경제성장을 밑거름으로 관광수요와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중국의 경제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로 인하여 해외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해외관광수요는 현재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변 중국과 일본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 국내관광환경의 변화

- 내수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 특히 관광산업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음.
- 국민 소득향상 등으로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 활용시간 증가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관광활동인구와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선호,노인중심의 관광참여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다. 관광개발의 한계

- 각종 토지이용·환경규제, 인허가 제도의 복잡 등으로 관광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투자 기피와 관광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의 입지규제는 사업부지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적지원이 미흡한 실정
-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산업 간 시너지 창출 필요

1.1.2 변경의 목적

민간기업주도로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주거·교육·문화분야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민간 창의 활력을 이용한 기업주도의 도시개발로 기업투자의욕 고취와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유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인 관광 및 R&D산업의 육성

- 미래관광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도시 건설
- 시장창출로 미래레저시장을 선도하는 유일의 관광도시 건설
- 관광레저와 첨단연구가 결합된 융복합도시 건설
- 태안군 발전에 기여하는 복합형 레저관광도시 건설

1.1.3 계획의 필요성

가. 국제관광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21세기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도시공간 조성이 절실

나.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 관광레저산업은 21세기 국가발전 성장원동력으로서 높은 부가가치, 고용창출이 기대되므로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음.

다. 국민여가수요 증폭 및 관광수지 개선

-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다변화되고 급증하는 국민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관광레저시설의 개발이 필요

라. 지역균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간척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지역을 관광개발지로 활용함으로써 국토 균형 성장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마. 민간자본의 적극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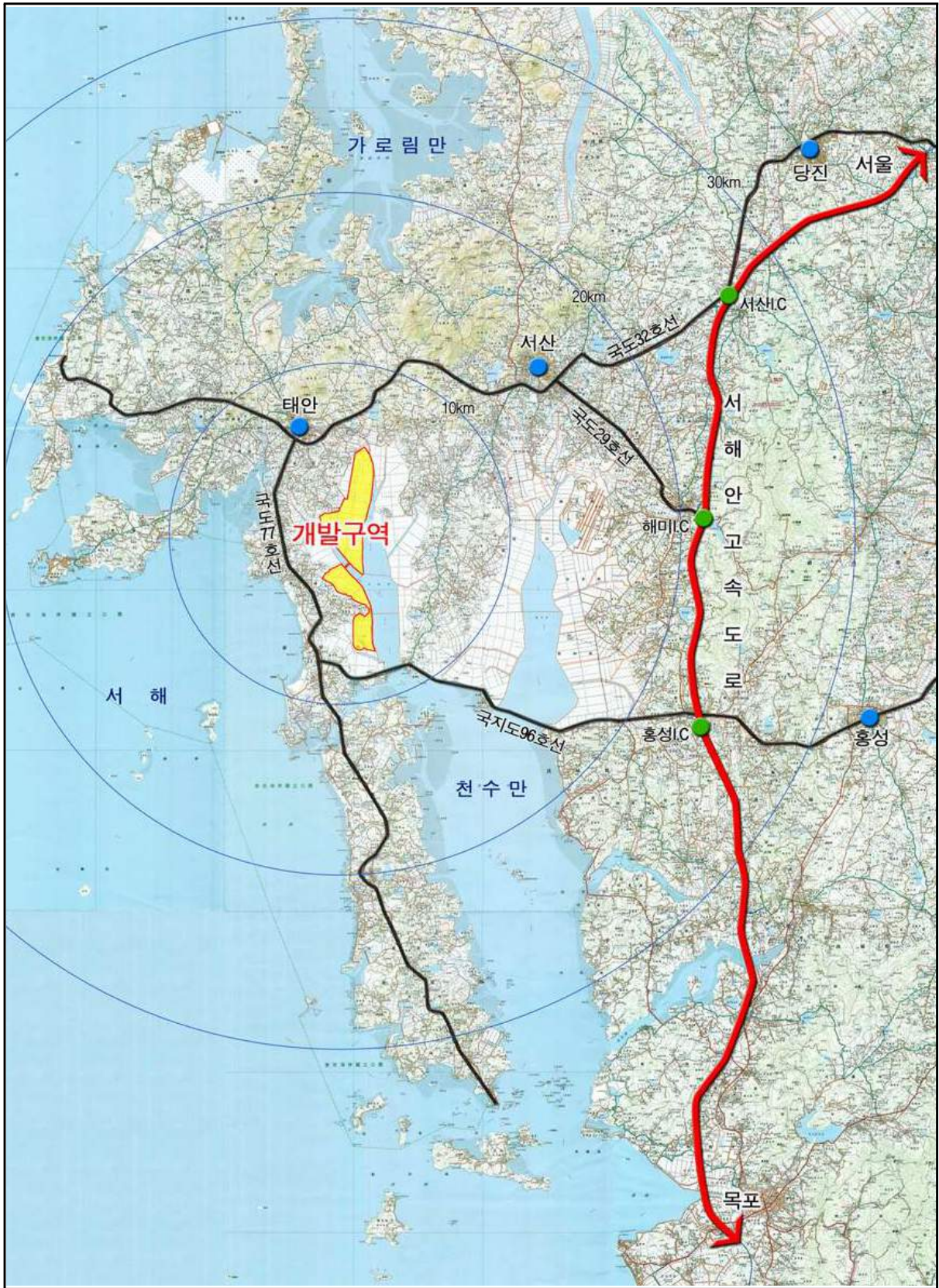
-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상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절차 개선, 토지구제완화 등이 절실

바. 복합화에 기초한 새로운 관광개발 시도

- 단순관광기능 외에 주거, 교육, 문화, 산업, 의료기능 등을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도시를 복합화하여 관광개발의 경제성과 사업성 제고 필요
-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시설과 주변지역에 정주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산업성장 기대

사. 관광레저와 첨단연구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도시 조성

- 최근 산업의 트렌드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함을 감안, 첨단연구시설 등을 도입하여 관광·레저 + 첨단·연구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도시 조성



(그림 1.1-1) 위치도

제2장 실시근거

2.1 환경영향평가 및 준비서 실시근거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2항 「별표3」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관(환경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였다.

〈표 2.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7. 01, 환경부

〈표 2.1-2〉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실시근거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7. 01, 환경부

2.2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 2.2-1>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7. 01,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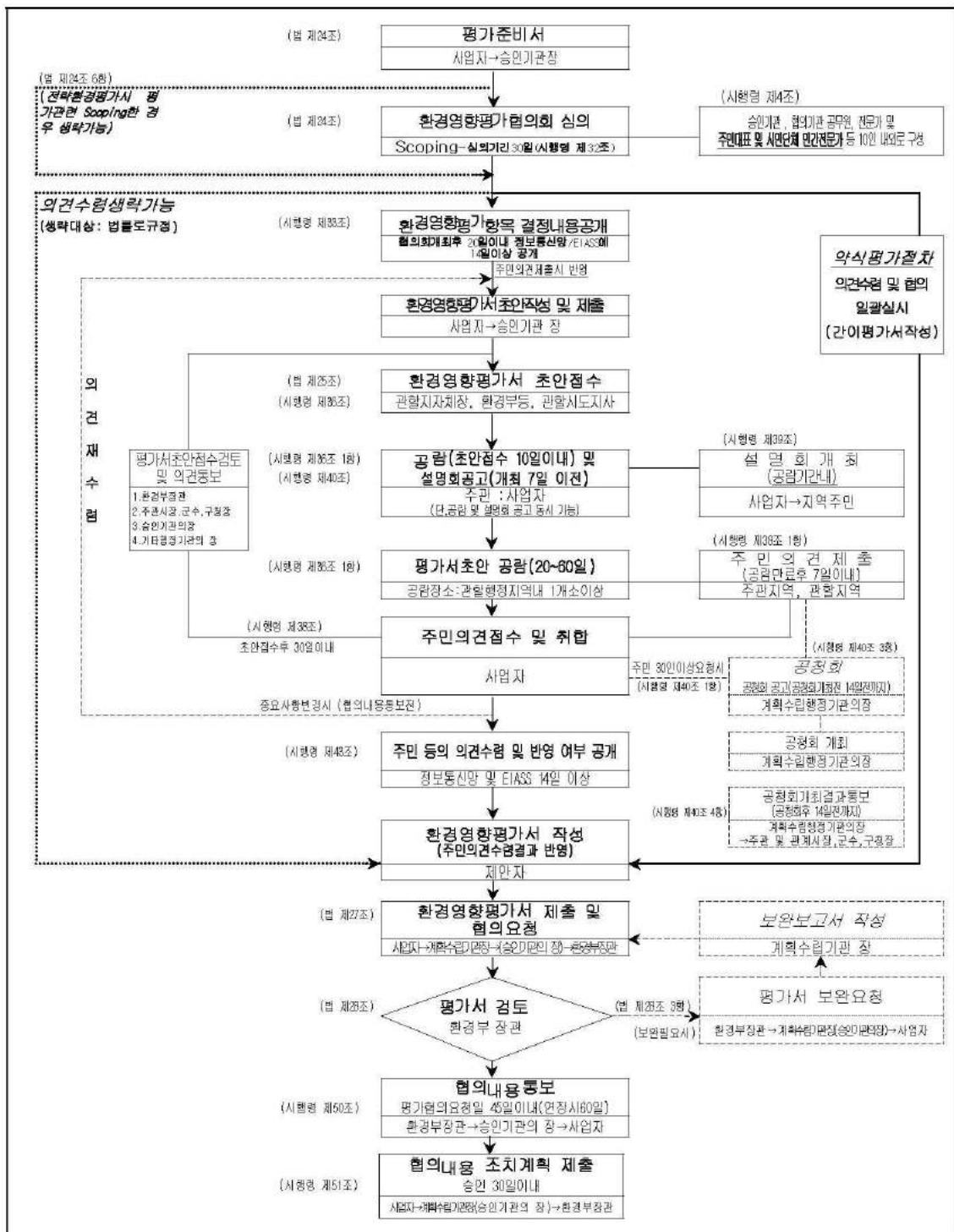
2.3 사업의 추진경위

- 2004. 12. 31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포
- 2005. 03. 21 :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제안(현대건설→태안군)
- 2005. 04. 14 :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제출(태안군→문화관광부)
- 2005. 08. 25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 2006. 05. 04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청회
- 2006. 05. 29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 2006. 05. 29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 2006. 08. 10 : 사전환경성검토 (1차 보완)
- 2006. 09. 27 : 사전환경성검토 (2차 보완)
- 2006. 11. 0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06. 11. 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6. 12. 19 :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2006. 12. 27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7. 02. 13 :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제출
- 2007. 02. 23 :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주민설명회
- 2007. 05. 15 : 환경영향평가(본안)서 제출
- 2007. 07. 10 : 환경영향평가(보완)서 제출
- 2007. 08. 14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07. 09. 14 : 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07. 10. 24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착공식
- 2008. 11. 17 : 석탄재 재활용과 관련된 **환경영향저감방안(1차)** 협의완료
- 2009. 05. 13 : 사업계획변경(토지이용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2차)** 협의완료
- 2010. 10. 01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부지조성 석탄재 재활용 변경
- 2011. 12. 30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2013. 12. 30 : 사업계획변경(석탄재 반입량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3차)** 협의완료
- 2014. 08. 06 : 태안 기업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 통보
- 2014. 09. 15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14. 11. 20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협의의견 알립
- 2014. 12. 31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14. 12. 31 : 부남호 준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알립
- 2015. 03. 23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 통보
- 2015. 04. 01 : “현대 태안CC 3,4”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15. 08. 11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15. 09. 07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현대 태안 CC 3,4」 사업계획[변경]승인
- 2015. 09. 17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 통보
- 2015. 09. 30 :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 승인 통보
- 2015. 10. 07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 통보
- 2016. 11. 25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검토의견 통보
- 2016. 12. 20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2017. 06.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환경영향평가(제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환경영향평가법]



(그림 2.3-1) 환경영향평가 업무절차도

2.4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명 :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천수만 B지구 일원
- 면적 : 15,463,982.0㎡ (당초 14,643,669.2㎡, 증 820,312.8㎡)
- 시행기간 : 2007~2017년(부지조성), 2011~2020년(시설공사)
- 사업시행자 : 현대도시개발(주) 대표자 박찬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 총 사업비 : 약 21,210억원(당초 25,366억원)

<표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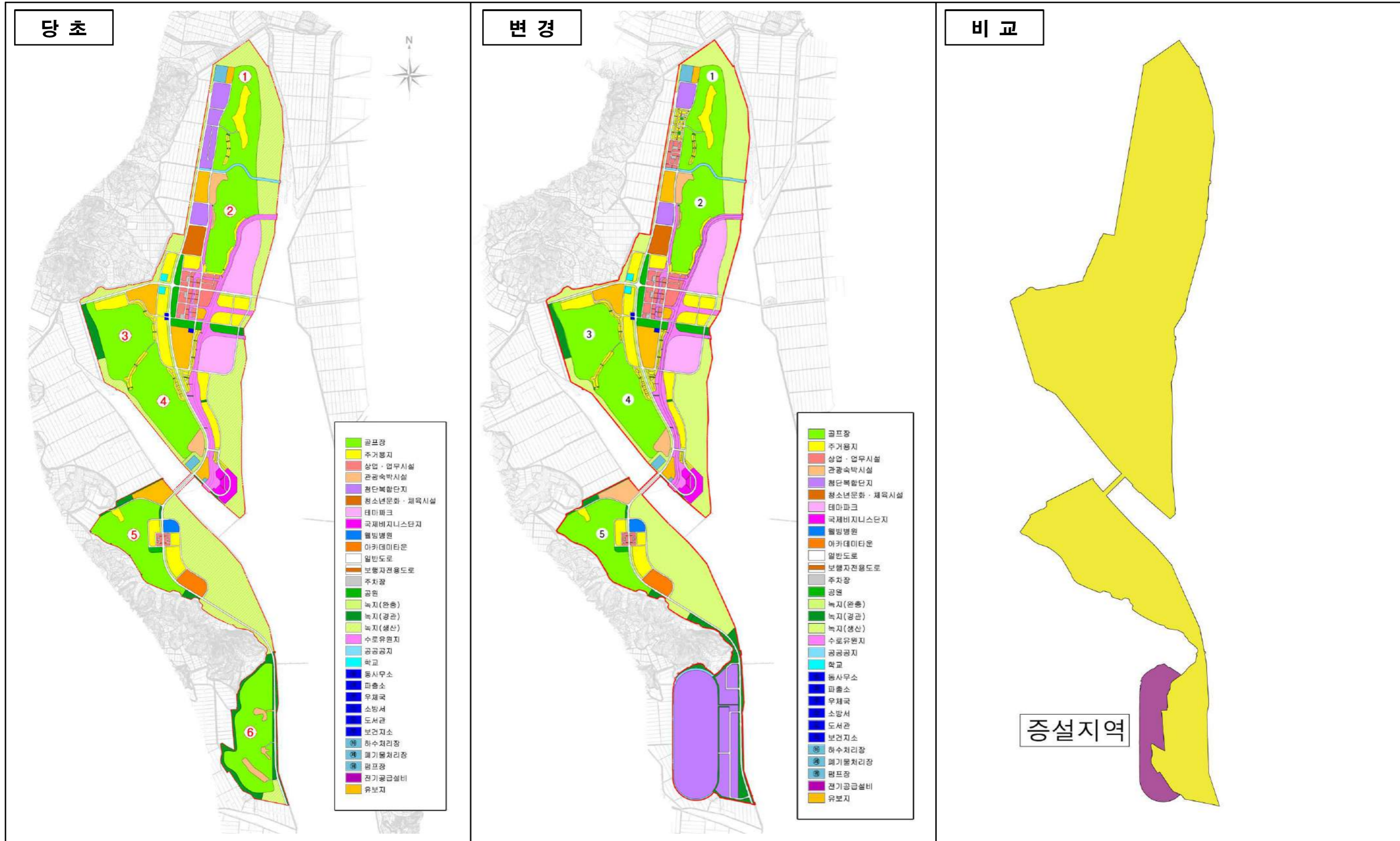
주요 변경내용

구분	당초 (최종 실시계획 승인시)	변경 (금회)
총 부지면적	14,643,669.2㎡	15,463,982.0㎡(증 820,312.8㎡)
신규편입면적	820,312.8㎡	
골프장	4,723,920㎡ (6개소)	3,799,540㎡(감 924,380㎡) (5개소)
상업업무시설	245,474㎡	303,938㎡(증 58,464㎡)
관광숙박시설	229,123㎡	275,803㎡(증 46,680㎡)
첨단복합단지	340,964㎡	1,966,494㎡(증 1,625,530㎡) (산업연구단지, 첨단연구시설 신설)
녹지	693,670㎡	852,970㎡(증159,300㎡)
농지	3,663,310㎡	3,513,628㎡(감 149,682㎡)
유보지	598,620㎡	471,085㎡(감127,535㎡)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표 2.4-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증·감 (E-C)	구성비 (%)
		환평협의사 ^{A)} (07.8)	실시승인사 ^{B)} (07.9)	실시승인사 ^{C)} (14.9)	구역지정 ^{D)} (16.12)	변경 ^{E)}		
계		14,734,000.0	14,643,669.2	14,643,669.2	15,470,158.2	15,463,982.0	▲ 820,312.8	100.00
골 프 장	소 계	4,773,410.0	4,772,910.0	4,723,920.0	3,799,540.0	3,799,540.0	▽ 924,380.0	24.57
	1	788,490.0	788,380.0	707,220.0	707,220.0	707,220.0	-	4.57
	2	682,920.0	682,620.0	714,790.0	714,790.0	714,790.0	-	4.62
	3	742,490.0	742,400.0	742,400.0	742,400.0	742,400.0	-	4.80
	4	843,860.0	843,860.0	843,860.0	843,860.0	843,860.0	-	5.46
	5	791,270.0	791,270.0	791,270.0	791,270.0	791,270.0	-	5.12
	6	924,380.0	924,380.0	924,380.0	-	-	▽ 924,380.0	-
주 거 용 지		1,189,550.0	1,123,101.0	1,185,697.0	1,227,892.0	1,227,892.0	▲ 42,195.0	7.94
상업 업무 시설	소 계	512,340.0	486,074.0	474,597.0	579,741.0	579,741.0	▲ 105,144.0	3.75
	상업·업무시설	271,980.0	245,474.0	245,474.0	303,938.0	303,938.0	▲ 58,464.0	1.97
	관광숙박시설	240,360.0	240,600.0	229,123.0	275,803.0	275,803.0	▲ 46,680.0	1.78
첨단 복합 단지	소 계	350,620.0	341,362.0	340,964.0	1,968,572.0	1,966,494.0	▲ 1,625,530.0	12.72
	바이오농업단지	99,280.0	99,100.0	99,100.0	99,100.0	99,100.0	-	0.64
	생명공학연구단지	45,980.0	45,941.0	45,941.0	49,850.0	-	▽ 45,941.0	-
	지역산업및골프산업단지	119,770.0	113,041.0	112,643.0	111,312.0	-	▽ 112,643.0	-
	영상촬영단지	85,590.0	83,280.0	83,280.0	83,280.0	83,280.0	-	0.54
	산업연구단지	-	-	-	365,125.0	365,125.0	▲ 365,125.0	2.36
	첨단연구시설 연구단지	-	-	-	1,259,905.0	1,259,905.0	▲ 1,259,905.0	8.15
		-	-	-	159,084.0	▲ 159,084.0	1.03	
청소년문화·체육시설		122,860.0	122,720.0	122,720.0	122,720.0	122,720.0	-	0.79
테마 파크	소 계	1,077,870.0	1,332,160.0	1,331,980.0	1,331,980.0	1,331,980.0	-	8.61
	테마파크	672,720.0	672,720.0	672,720.0	672,720.0	672,720.0	-	4.35
	수로유원지	405,150.0	659,440.0	659,260.0	659,260.0	659,260.0	-	4.26
국제비즈니스단지		119,660.0	113,826.0	113,826.0	113,826.0	113,826.0	-	0.74
웰빙병원		43,110.0	43,110.0	43,110.0	43,110.0	43,110.0	-	0.28
아카데미타운		106,100.0	106,100.0	106,100.0	106,100.0	106,100.0	-	0.69
공공 편익 시설	소 계	5,801,710.0	5,603,176.2	5,602,135.2	5,705,517.2	5,701,494.0	▲ 99,358.8	36.87
	도로	804,410.0	930,884.2	927,083.2	1,001,912.2	1,005,199.0	▲ 78,115.8	6.50
	주차장	9,720.0	11,092.0	11,092.0	18,779.0	18,779.0	▲ 7,687.0	0.12
	공원	197,200.0	197,200.0	197,200.0	201,138.0	201,138.0	▲ 3,938.0	1.30
	녹지	945,540.0	690,910.0	693,670.0	853,280.0	852,970.0	▲ 159,300.0	5.52
	농지	3,663,660.0	3,663,310.0	3,663,310.0	3,520,628.0	3,513,628.0	▽ 149,682.0	22.72
호수(부남호)		71,400.0	-	-	-	-	-	-
학교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	0.14
공공청사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	0.02
도서관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0.03
보건소		2,470.0	2,470.0	2,470.0	2,470.0	2,470.0	-	0.02
하수처리장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	0.17
폐기물처리장		46,630.0	46,630.0	46,630.0	46,630.0	46,630.0	-	0.30
펌프장		3,465.0	3,465.0	3,465.0	3,465.0	3,465.0	-	0.02
전기공급설비		1,015.0	1,015.0	1,015.0	1,015.0	1,015.0	-	0.01
유 보 지		636,770.0	599,130.0	598,620.0	471,160.0	471,085.0	▽ 127,535.0	3.05



(그림 2-4)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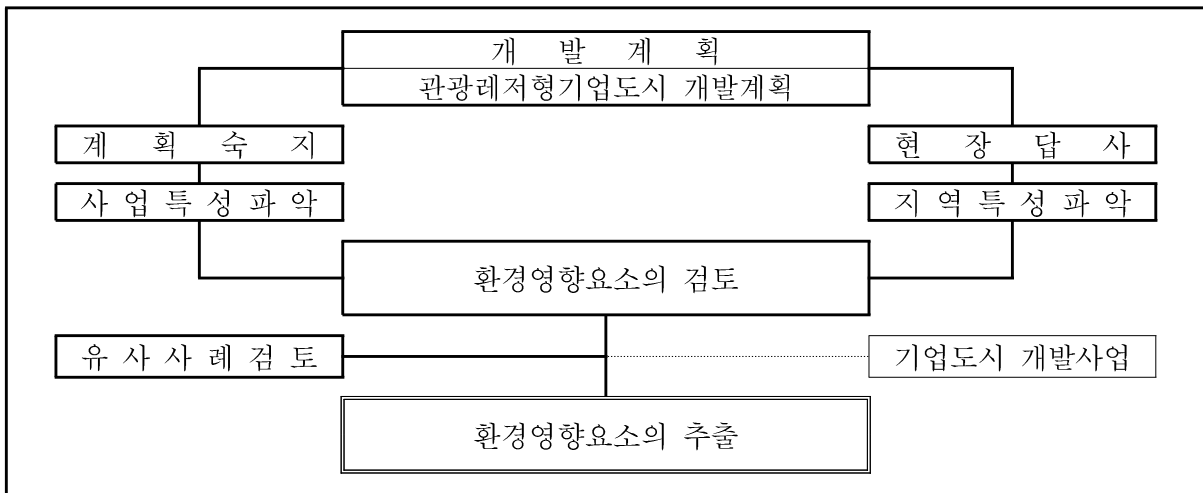
제3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3.1 평가항목의 설정

3.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사시 및 운영시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그림 3.1.1-1)의 절차에 따라 추출하였다.

사업의 개요와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숙지한 후, 현장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유사사업(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과 현재까지의 검토 및 협의의견을 파악하였다.



(그림 3.1.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흐름도

<표 3.1.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공사 단계	운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변화, 식생변화, 서식지 변화 등 ○ 토량의 부지내 이동 및 외부 유출입 ○ 비산먼지나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 ○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영향 ○ 공사에 따른 각종폐기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의 변화 ○ 비점오염물질과 수질오염총량의 변화 ○ 하류 하천의 수질변화 ○ 차량증가 및 에너지사용에 의한 변화 ○ 구조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

3.2.1 평가항목의 설정 · 대상지역 · 방법 등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 사유	평가사항	예측·분석·평가방법	평가대상지역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생태계의 영향 여부	○ 현존식생 및 동물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파괴 및 동물이동 방해여부	○ 기존 문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의 식생의 변화, 동물상의 변화를 예측·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 환경	기상	○ 대기질 예측의 기본 요소로 작용하므로 설정	○ 연도별 및 월별 기상개황	○ 평가대상지역에 가장 인접한 서산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주변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대기모델링의 기초자료로 사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 공사시 건설장비 및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	○ 현재의 대기 오염도를 조사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	○ 현황측정을 실시하여 현 대기질 상태를 파악한 후, 공사시 건설장비 및 토사 이동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운영시 난방·취사연료사용에 의한 오염물질에 의한 농도증가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 환경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하수발생에 의한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 가중	○ 인근하천의 수질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저감 대책 제시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로 인한 영향 및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질개선	○ 부남호의 오염저감 및 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 여부	○ 수질개선 효과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총 오염물질 삭감 대상량, 오염원별 삭감 가능량 분석, 수질 모델링 등을 통한 목표수질 달성·유지 가능성 평가	부남호 및 부남호 유역	
토지 환경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사유지 및 시설 철거 여부	○ 구역별 개발면적 검토 ○ 토지보상 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농경지 등의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및 사업계획내용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분석 및 계획 ○ 구역별 입지시설의 개요 및 개념 분석을 통한 전체사업의 특성파악	사업지구내	
	토양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현황 기초조사	○ 공사시 폐유발생에 따른 영향 ○ 운영시 농약, 비료사용에 따른 영향	○ 기업도시 공사시 폐유 및 폐기물 투기에 따른 영향과 운영시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영향의 예측·분석	사업지구내	
	지형·지질	○ 도시건설을 위한 지반의 안정성 파악 ○ 자연지형의 훼손여부	○ 지층, 지반특성, 지하수유동 등 토질특성 파악 - 자연지형의 훼손지역의 파악 및 안정화 대책	○ 평가대상지역의 지형·지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자료(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및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및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성을 예측·분석 ○ 평가대상지역내 존재하는 연약지반을 분석하고, 연약지반 특성별로 적합한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후 모델링에 적용하여 처리가능성 및 안정성 분석	사업지구내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유, 건설폐재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에 측 처리대책 제시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공사인부 및 분뇨에 의한 영향 ○ 운영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예측 및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및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및 운영시 부지내 도로 소음에 미치는 영향예측·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위락·경관	○ 토공사 및 건물의 조성에 따른 경관변화	○ 현지조사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경관 영향파악	○ 사업지구 내·외의 경관 조망점을 선정하고 주요 경관변화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영향예측·분석	사업지구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거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증가 및 주거형태 변화	○ 이용인구, 상주인구, 상근인구의 계획 및 주택수 산정	○ 공사시와 운영시 인구(고용/상근/이용) 및 주거 변화예측·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산업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시설 및 구조 변화	○ 태안군의 산업시설 현황 분석 및 산업구조의 변화 예측	○ 태안군의 산업시설 현황 분석 및 산업구조의 변화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3.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할 것이며,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u>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u>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p>
--	---

3.3.1 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이며,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3.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논산시와 설명회 장소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이다.

3.3.3 관계기관 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태안군, 환경부 등에 보고서를 접수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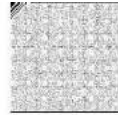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4.1 심의 개요

- 심의 개최일 : 2017. 6. 29 ~ 2017. 7. 13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협의회 운영주체 : 태안군
- 협의회 구성

구 분	소속 / 부서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과장	진○○	
위 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주무관	최○○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주무관	황○○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과장	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한○○	
	태안군 기업도시지원센터	팀장	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태안군 남면 양잠1리	주민(대표)	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

1.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를 심의코자 귀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협의회 운영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붙임 2)를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7.13.(목)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팩스 044-203-3480 또는 이메일 cys09@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1부.
-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별송).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환경부장관(국토환경평가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충청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태안군기업도시지원센터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이문재 귀하, 태안군 남면 양잠1리 주민 가순식 귀하

주무관	최양서	관광개발과장	진주원	관광정책관	김태훈	전결 2017. 6. 29.
협조자						
시행	관광개발과-2615	(2017. 6. 29.)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849	팩스번호	044-203-3479	/ cys09@korea.kr	/ 비공개(5,6)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그림 4.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공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 총괄 의견

- 동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을 일원에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 사업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국토환경평가과-3439(2016.11.25)호]을 적정 반영하여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다양한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그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 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인근 각종 문헌자료를 상세히 분석·제시
- 사업지구 인근 부남호 및 간척지 일원은 법정보호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인 마, 부남호 등에 도래·서식하는 조류의 서식 특성을 조사하고,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강구
-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남호의 수질영향을 예측하고, 오염물질 유입 저감 및 수생태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지구 남측에 계획한 연구단지 및 산업연구단지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악취, 대기질, 진동 등)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마련
- 첨단연구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사 및 운영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중점 평가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각종 문제,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치하고 지역주민에게 배포하는 등(on-off line)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

5. 기타

- 동 사업지구는 2007.8.14.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 인 바, 당시 주변 여건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평가하여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사업지구내 세부 단지별 공사 진행현황을 사진, 표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017. 7. 12.

심의위원 환경부 황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 의견

- 평가항목 및 범위가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가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 다만, 부남호와 인접한 천수만의 해양생태환경 차등방안 등이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절하게 수립되었던 향후 주민설명회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계획이 필요로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2017. 7. .

심의위원 가

(그림 4.1-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 의견

-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안 설정·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영향 범위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1이 적정하다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기 완료된 사업지역의 토양, 수질 등 오염도 검사결과 실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 사업으로 인한 소음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대규모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와 항목을 설정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들에게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함

2017. 7. 11.

심의위원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개발방향과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
-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자료를 제시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 없음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주요 활동 및 생육시기, 분류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계절에 조사 실시
 - (대기질·소음·진동) 추가 편입되는 주행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경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경관변화 예측(골프장→주행시험장 등 점 단복합단지, 원단복합단지→공동주택·상업시설)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평가요약서를 제공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 없음
6. 기타
 - 의견 없음

2017. 7. .

심의위원 한

(그림 4.1-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3,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 의견

- 사업지구 내 동식물상 현황을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의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 뿐 아니라 부남호 및 인근지역 등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시행 시 첨단복합단지 규모가 적은 대안1이 대안2보다는 자연환경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부남호와 인접한 녹지공간에 수립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통해 물새(물가을 도요 물떼새, 겨울철 오리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동물 각 분류군별 사업지구 및 인근(부남호 포함)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와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자료를 검토하여 야생 동식물상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본 대상구의 주요 분류군인 조류는 현지조사를 계절별 수행하여 적절한 피해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련 규정에 의거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필요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현지 조사시 조류의 비행 방향, 이동, 비행 고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내 건물의 높이 등 참고 필요

2017. 6 . 30 .

심의위원 이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의견서

□ 총괄의견

- 본 건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2007년 협의완료된 이후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의 검토의견임

□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절성
 - 본 환경영향평가(재협의)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물리적 계획에 대한 것으로 건축 및 토목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방함
 - 다만,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경우 태안군은 물론 도로 및 교통현황을 고려하여 서산시 지역도 공간적 평가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함
-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 특이사항 없음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본 건이 환경보전방안이 아닌 재협의이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지역설정 및 영향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그간 10년간 변화된 환경영향평가의 패러다임과 평가기법을 참고하여 대기환경분야에 온실가스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계획변경 및 지역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산업구조 등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새로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 의견 없음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위 원 : 유 또는 날인)

(그림 4.1-4)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5,6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 의견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사업부지 인근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인 부남호가 위치 등) 및 사업특성(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급회 사업의 주요 목적인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 설치와 관련하여, 동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소음 및 비점오염물질 등'을 저감시켜 친환경적 시험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예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를 활용한 타이어 주행시험)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평가준비서의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19~21쪽)"에서 동·식물상 등 평가 대상항목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축소 제시함에 따라, 본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대상지역을 제외할 수도 있게 됨. 따라서, 사업부지의 입지여건(사업부지 인근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인 부남호가 위치 등) 및 사업특성(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 건설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영향지역 포함)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환경보전방안 수립이 필요함.
 -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자동차 배출가스), 주행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타이어 등 마모에 의한 오염물질) 등의 저감 또는 적정처리 방안 수립 필요
 - 사업부지 인근의 주거지에 대한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양호한 서식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를 활용한 타이어주행시험)
 - 특히, 소음관리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자동측정시스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info.or.kr)에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의 평가내용에 빙공해 분야를 추가하여야 함.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철새도래지로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인 부남호가 위치) 및 사업특성(숙박시설 및 골프장 건설)을 고려할 때, 본 사업부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빙공해 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및 제11조(빔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인공조명(가로등, 장식조명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빔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자연환경(동물 및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환경분야(동·식물상)에 빙공해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 대기질
 - (운영시)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평가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수질
 - (운영시)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타이어마모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및 영향분석(수질, 폐기물 등)을 평가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 없음.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2017. 7. 13.

심의위원 김
*전자문서 발송에 따른 서명생략

(그림 4.1-5)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 관 의 건

-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자연·환경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가 요구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적정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토양, 수질) 자동차타이어 주행시험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 및 저감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동·식물상) 사업지구 인근에 서식 중인 동·식물의 환경 영향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여 생태계 등 서식 환경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철저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별도 의견 없음

2017. 7. 13.

심의위원 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 관 의 건

- 첨단 연구시설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 및 빛 공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진행 사항 안내 노력이 요구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대안 중 '대안 1'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대기질) 타이어 주행시험장 설치에 따른 대기질 영향 검토 및 구체적인 대기오염 저감방안 마련 필요
 - (동·식물상)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 동·식물(철새 포함)의 생태변화 검토 항목 추가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지역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진행 사항 안내 노력 필요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별도 의견 없음

2017. 7. 13.

심의위원 최

(그림 4.1-6)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8,9

붙임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천수만 B지구 일원	
시행자	현대도시개발(주)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